

황명준. 2019. “일본 국제인권법학회 소개와 2019년도 연구대회의 주요 내용” 『인권연구』 2(2): 159-179.

Hwang, Myoungjun. 2019.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sociation of Japan and the Report on its 2019 Conference”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2): 159-179.

[현장논단]

일본 국제인권법학회 소개와 2019년도 연구대회의 주요 내용

황 명 준*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학회의 특성
- III. 2019년 연구대회 보고 소개
- IV. 결어

I. 들어가며

일본 국제인권법학회(国際人権法学会)는 일본 내 범 국제법 계열의 학회 중에서 인권 담론에 충실 하려는 연구자, 실무가들이 주축이 된 학술 단체이다. 즉, 종래의 학술 단체 중 일본 국제법학회(國際法学会)나 세계법학회(世界法学会) 등지에서 지향하는 국제법 담론과 비교한다면, 국제인권법학회는 일본의 관료사회나 주류 법학계에 의한 주도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실의 인권 침해나 관련법 체계 발전의 지체에 대하여 고민하는 플랫폼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두 학회와 비교한다면 인권에 대한 최전선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회원(인권 변호사)들이 상당수 주축으로 활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 동아대학교 강사

국제법 발전 과정에서도 관이 깊숙이 개입하였던 일본에서 국제법 학회는 일찍이 1897년,¹⁾ 세계법학회도 전후 1965년에 설립²⁾되어 연구대회의 연혁을 현재까지 추적하였음과 비교할 때 국제인권법학회 발족은 1988년에야 비로소 실현을 보았음³⁾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인권법의 독자적 분화와 발전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존재하겠으나 개인, 궁극적으로 소수자 인권의 보장에 친화적이지 아니한 일본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다고 읽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인권법학회를 일본 내에서 인권에 친화적인 시선을 담아내는 장의 하나로 전제할 수는 있으나, 본 학회에서 논의된 쟁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일본의 주류 담론 속으로 확산된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본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대립되는 일본 내 연구에 관한 것인바, 조심스러운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국(同國) 내 현재적 연구 활동이 어떠한 플랫폼에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되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은 비교법학적 견지에서나 인접국 실행에 대한 자료 추적이라는 측면에서나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인접국 내 논의일수록 이들의 국제법, 국제인권법의 논의 수준에 대한 분석의 실익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측면에서의 고민은 우리나라 논자들에게서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국제인권법 담론과 관련하여 일본 내 관료들의 소극적 접근 방식에 비판적이고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학자, 실무가들의 논의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추적하고 가능할 경우 연대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하고서 2019년 11월 도쿄 메이지 가쿠인(明

1) <https://gakkai.jst.go.jp/gakkai/detail/?id=G00025> 참조.

2) <http://www.jawl.jp/annualconf/1965-2002program.pdf> 참조.

3) <http://www.ihrila.org> 머리말 참조.

治學院) 대학에서 개최되었던 일본 국제인권법학회 제31회 연구대회에 참관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인권법학회 박찬운 회장님과 동행하여 보고(발표)⁴⁾도 직접 경청하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이 연구대회에서 이루어진 보고자들의 보고 중 우리의 논의와의 비교가 가능하거나 특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일본 인권법학회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연구자, 실무자들의 현 시점에서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어떠한 측면에서 관이 주도하던 종래의 일본 국제법 학계와는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와 실무자 분과의 연대가 가능할 접점이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가 다양한 측면에서 모색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II. 학회의 특성

1. 설립 취지문

우선 일본 국제인권법학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1988년 12월 10일 학회 출범 시에 나온 ‘국제인권법학회 설립 취지서’에 잘 드러난다. 특히, 통상적인 국제법과 차별되는 국제인권법의 특징과 당대의 일본에서 이를 위한 연구 플랫폼을 출범시키고자 하는 당위성을 적절히 논하고 있다고 보인다. 비록 1988년 이후 30년간 국제인권법에 관한 논의가 일본의 주류 사회로까지 확산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 남으나 일단 본 학회의 방향성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그 내용을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4) 일본 학회에서는 presentation과 이를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고, 보고자 등의 용어를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올해 1988년은 세계인권선언 제40주년에 해당되며, 일본이 국제인권규약에 조인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 10년 동안 일본은 유엔 인권위원회 위원국이 되어 차별방지·소수자보호 소위원회에 전문가를 파견하였으며, 국제인권규약 인권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도 위원을 파견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재판소나 그 외의 장에서 인권조약이 원용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소위 국제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국제인권’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추세이다.

국제인권보장에 관한 연구는 전후의 선구적 연구로부터 난민문제 연구 등을 거쳐 젊은 세대로 계승되어 왔으며, 유엔 등 국제기관의 실태나 유럽, 미국, 아프리카의 각 인권조약의 연구로까지 국제법 연구자를 중심으로 저변을 넓혀 왔다. 그러나 국제인권보장의 국내적 실시 단계에 이르면 헌법 기타 국내법 연구자나 법률 실무가 등의 참여 없이는 다량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더욱이 일국 내의 인권보장은 사람들이 세계의 인권 현황에 부단히 시선을 기울임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적 차원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여는 불가결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종 정보를 구하고 이를 전파하거나 보급하는 활동 역시 지금까지 이상으로 긴요하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인권 프레임의 형성 역시 진정한 학제적 연구에 의하여야 그 기반이 정비될 수 있다.

국제인권보장이나 그 국내적 실시 나아가 인권외교의 제 문제는 이제까지 국제법학회, 공법학회, 국제정치학회를 위시한 관련 학회 등지에서 제각기 연구보고를 통하여 다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개별 학회나 단발적 연구회, 심포지엄 등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계통적, 학제적으로 내외 연락을 긴밀히 하여 정보, 지식, 연구 등의 역량을 교환하며, 연구자도 실무가와 더불어 하나의 성과를 구축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믿는다. 내년 1989년은 어찌 되었건 간에 일본이 근대적 헌법을 확립하고서 100주

년이 되는 해이다.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국제적 연관성 속에서 인권을 고찰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널리 세간에 호소하고 국제인권법학회를 설립하는 바이다.

1988년 12월 10일⁵⁾

이 설립 취지문은 냉전 말기 당시 일본 내 인권 담론이 처한 한계와 극복 과제를 적절하게 보여준다. 이후 30년 동안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인권법의 외연이 확대되고 연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며, 일본의 학계도 그러한 흐름을 인지하고서 나름의 대처 방식에 대하여 고민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상기 설립 취지문에서 내걸었던 당면 과제 중에 민주화 이후 인권 담론에 대하여 법조계, 학계, 시민 등의 차원에서 점진적이라 하더라도 현재적 발전 추세에 상응하는 변화를 보이는 대한민국과 비교할 때, 일본에서는 여전히 성과를 못 보는 부분도 많음이 현실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개인통보제도를 위시하여 주요 국제인권법 체제에 있어서 관료사회와 학계, 실무자들 간의 인식 괴리가 여전하며, 이번 2019년 보고대회의 전야제 격인 심포지엄에서도 이러한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30년 전의 본 설립 취지문은 과거의 연혁적 산물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일본 국제인권법학회가 기본적 방향타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현재 진행형의 가이드라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2. 학회 회칙 관련

원론적인 연혁에 관한 언급과 방향성 확인이 내용의 주종인 취지문과 비교할 때, 일본 국제인권법학회의 회칙은 국제인권법학회 회칙에 따르면 제2조에서 ‘본 학회는 인권에 관련된 국제적 및 국내적 제반

5) <http://www.ihrila.org/establish.shtml> 참조

문제를 관련 학문의 제 영역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함을 통하여,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⁶⁾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 부분에서는 인권문제의 기원에 국가 영역 내외를 불문함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소통 나아가 학문의 제 영역 간 교류를 강조하는 일본 국제인권법학회가 적어도 회칙상 국제법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과 친화적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일견 특별한 하자가 없는 국내법적 실행이라도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른 수용이나 해석상의 수정, 변형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구실로 원용된다면 이는 인권법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의 측면에서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학제 간 협력을 예정하는 대목에서는 미시적 측면에서 해석 법학의 방식이나 엄격한 법실증주의의 틀에만 구애된 나머지 인권보장의 확산이라는 대의와 목표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다. 물론, 국제인권법학회뿐 아니라 대안적 성격이 내포된 세계법학회도 그 학칙 제2조에서“세계법 및 세계연방에 관한 제 문제의 연구 및 그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⁷⁾고 명시하는 등, 해석 법학이나 아카데미즘으로부터의 탈피 노력은 전자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⁸⁾ 다만, 법학이나 거시적 담론 추구에 선행하는 인권의 확립이라는 정체성은 인접 분야와의 제휴 가능성을 널리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회칙 제3조는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연구회 및 강연회의 개최, 인권에 관련된 연구 촉진 및 각종 정보 수집·발표 및 보급, 기관지 및 회원의 연구 성

6) <http://www.ihrila.org/statute.shtml> 참조.

7) <http://www.jawl.jp/rules.html> 참조.

8) 다만, 세계법학회의 경우 세계 연방이나 그에 관련된 제반 문제 등 보다 거시적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계로 인권을 매개로 하는 학계, 법조계 기타 활동가들의 교류의 장을 예정하는 일본 국제법학회에 비하여 외연은 상당히 제약될 것이다.

과의 간행 등의 전형적인 학술, 연구활동을 예정하고 있다.⁹⁾ 다만, 관이 주도하거나 고전적 의미의 법학 계열 학회와 비교할 때, 인권 담론의 주도를 위한 정보 수집, 확산 등의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어 특징이다. 둘째, 국내외 학회 및 관계되는 여러 기관, 단체와의 연락을 추구하며, 연구자, 변호사 기타 실무가 간의 교류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추진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 회칙은 인권의 연구에 국경이 있을 수 없으며, 뜻을 같이하는 실무가, 연구자, 각종 단체라면 특별한 제약 없이 교류, 상호 이해를 예정하고 있음이 특징이다.¹⁰⁾ 그리고 본 회칙은 그 자체로서 국제법학회나 세계법학회가 지향하여 왔던 국가, 국제기구 중심성을 탈피하고 있다.

결국, 일본 국제인권법학회 회칙에서도 본 학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잘 드러나고 있으며, 2019년 연구대회에서의 보고자들도 그러한 정신에 따라 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저널 ‘国際人權 (Human Rights International)’

한편, 일본 국제인권법학회의 활동 중 주요한 요소는 연 1회 발행되는 저널 国際人權(信山社 발행)의 발간 사업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학회 회칙 제3조 제3항을 근거¹¹⁾로 수행되며, 창립 제3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제30호(기념호)가 발간되었다.¹²⁾ 일본 국제인권법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최신호는 물론이고 창간 이래 지금까지 역대 호에서 어떠한 고민이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목차 등 서지 목록을 제

9) Ibid.

10) Ibid.

11) *Supra* note 10.

12) 최신 호의 내용은 <https://www.shinzansha.co.jp/book/b487265.html> 참조. 다만, 연구대회의 경우 이번 2019년도 연구대회가 제31회 대회로 약간의 차이를 보임.

공하고 있다.¹³⁾

본 저널은 학계, 실무계나 시민단체에서 인권 담론에 관심있는 분들의 다양한 참여를 반영하듯이 이 저널을 보면 전형적 의미의 논문 또는 그와 유사한 형식에 구애되지 아니한다. 특별기획 논문, 일반공모 논문을 제외하고서도 기획 코너를 통하여 다양한 평석을 모으고 있으며, 특별기고, 특별강연, 국외 동향, interest group 보고, 판례 소개, 서평 그리고 문헌 정보 등 여타 학회의 저널에 비하여 현재 시점의 인권 동향에 접근할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며, 기고자들도 일본 학자, 실무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재일 한국·조선인, 한국 출신 학자, 실무가들도 저널에 기고하고 있다는 점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¹⁴⁾

제30호만 보더라도 타이완의 인권실시법, 평화에의 권리에 관한 한국의 헌법재판, 한국의 자유권 문제 등 아시아적 현안과 EU 내에서 고조되는 헝가리의 반인권적 실행에 대한 경계 등 아시아 이원 지역에서의 문제에도 고찰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적으로 시리아 난민소송,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문제, 그리고 hate speech와 배외주의 집단의 데모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¹⁵⁾ 특히, 이번 호는 판례 소개 부분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의 내용에 대하여 2개의 분석을 통하여 상술하는 등, 국제인권법의 측면에서 일본의 아킬레스 건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배 문제에 있어서 양비론적 회피가 아니라 비교적 이를 직시하려는 경향을 보임은 현재의 한일 관계의 냉각 구도 속에서 대단히 다행스럽다 할 것이다.¹⁶⁾

13) 목차와 관련하여 <http://www.ihrla.org/magazine.shtml> 참조. 다만, 각 호의 내용까지 홈페이지 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님.

14) *Supra* note 12.

15) *Ibid.*

16) *Ibid.*

연구를 위한 장(platform)을 견고히 함은 많은 직무 이사진의 공헌을 통하여 가능할 것인데, 본 학회의 제11기(현재) 이사회는 39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에 의하여 구성, 운용된다.¹⁷⁾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학회 회원은 404명(대학원생 27명 포함)에 이른다고 하며, 앞서 학회 소개 과정에서 거듭 언급, 인용된 학회 홈페이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면, 큰 탈없이 적절히 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2019년 연구대회의 보고 내용 중 주요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Ⅲ. 2019년 연구대회 보고 소개¹⁸⁾

2019년 연구대회가 지향하는 문제의식은 대회 프로그램 서두에 적절히 드러나 있다. 국내외 개별 보고자들의 개별 발표 내용이 반드시 문제의식과 상통한다고 속단할 수는 없으며, 현재 시점의 한일 관계 등 민감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전체적 흐름의 파악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국가권력의 행사 중에서도 형사법에 입각한 부문의 특질로서 형사법과 인권법의 협조와 대립 양방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다. 즉, 형사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법익 보호를 통한 인권의 보호 증진이라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형사법은 본래 형벌의 형식을 빌어 인권 침해를 예정하고 있으며, 권력 행사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되듯이 인권 제한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 구도는 국제적 차원을 포함하여 고려할 때,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주권국가가 수평적으로 병존하는 국제사회에서 대저 어떤 방식으로 국제형사법이 가능한지, 실효적인

17) <http://www.ihrila.org/board.shtml> 참조.

18) 동 연구대회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각 보고자의 연구 프린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지, 나아가 정통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한편, 사실적 차원에서 인도법·인권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각종 국제 형사법정이 설립되고 실천이 촉진되며, 또, 각종 조약의 요청에 따른 각국의 형사적 규율이 증대되는 추세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요청에 과연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아동, 여성 등 희생되기 쉬운 주체나 전쟁·내전과 같이 인도법이 문제되는 상황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이 경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강력한 국제적 규율이 때로는 과잉이라는 점도 지적되는데, 특히, 테러나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국제적, 국내적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또, 예로부터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형사 분야에서의 권력 행사에 대하여 인권의 척도로 대항하는 구도 역시 중요하며, 헌법이나 국제법이 정하는 인권 기준으로부터의 평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 사형이나 대안감옥 등 예로부터 지적되는 논점이나 정보 수집으로 대별되는 현재적 논점, 그리고 시기적으로 카를로스 곤(Carlos Ghosn) 사건¹⁹⁾ 과정에서의 검찰, 사법부의 실행을 두고 회자되는 소위 ‘인질사법’의 인습적 방식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은 인도법과 관련하여 제네바 협약 채택 제70주년, 형사법과 관련하여 고문방지협약이 일본에 발효된 지 20주년의 절목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2020년 4월에는 제14회

19) 1999년 부도 위기에 있던 일본의 닛산 자동차를 자본 제휴를 통하여 인수한 르노 자동차의 부사장이었던 인물로서 닛산 자동차에 파견, CEO가 되었다. cost killer라는 별칭에서 보이듯 강력한 구조 조정으로 닛산 자동차를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반면, 일본 경제계의 고유한 관행이나 정서를 무시한 독선적 정책으로 비판이 고조되던 가운데, 2018년 11월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쿄에서 전격 체포되어 큰 파문을 야기하였다. Ghosn 회장의 구속기소 이후 보석이 부여되었음에도 그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검찰에 의한 재체포와 뒤이어 보석이 반복되는 등 일본의 사법적 실행에 대하여 마치 ‘인질’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유엔범죄방지 형사사법회의(Kyoto Congress)가 개최될 예정인데, 일본 내 개최는 무려 반세기만이다. 이를 기회로 ‘형사법과 국제인권’이라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곤란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²⁰⁾

본 연구대회에 즈음한 문제의식에서는 민감한 인권 담론과 관련하여 일본이 사실상 이원론을 견지하며, 국내적 수용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성이 드러나 있다. 2019년의 연구대회는 형사사법회의를 위시하여 국제사회에 일본의 국제인권법 이행 정도가 널리 전파되는 계기가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시점에 개최되는 관계로 이를 사전 점검하려는 성격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²¹⁾ 이하의 부분에서는 대회 일정 동안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심포지엄: [국제인권규약 제40주년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제20주년에 즈음하여 - 완전한 국제인권기준의 실현을 지향하며]²²⁾

보고 : Manfred Nowak(Wien대 교수, 동 대학 인권자료센터 소장)²³⁾

20) <http://www.ihrla.org/assembly/2019.pdf> 참조.

21) 실제로 연구대회 둘째 날 오후 일정의 상당 부분이 Kyoto Congress 준비 일본 측 working group 의 발제나 일본의 인권외교, 인종차별철폐협약에서의 활동, 장애인인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일본인 전문가들의 진단이 이루어졌는데, 지엽적인 언급이 많았던 관계로 본 방문기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22) 국제인권법학회 연구대회 전일,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메이지대학 비교법 연구소가 공동 개최. 동 교수는 다음 날 기조 강연을 하였는데, 오히려 전일의 심포지엄에서의 지적 사항이 심도 있는 논의였던 관계로 이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23) Independent Expert leading the 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 Children’s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

Nowak 교수는 연구대회의 기조강연에서도 일반적, 총론적 차원에 충실하게 ‘아동 권리와 국제법적 프레임’을 언급하였다.²⁴⁾ 하지만 포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일반론과 현황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상 빠듯하였던 관계로 관련 권리가 일본에서 어떠한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오히려, 연구대회 전일 메이지대학²⁵⁾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국제인권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이행 정도를 밀도 있게 비판적 견지에서 언급하였다.

전날의 심포지엄은 일본의 국제인권규약(ICCPR) 비준 40주년, 고문방지협약(CAT) 비준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본, 동아시아권의 실행에 관한 Nowak 교수의 평가, 분석을 듣는 자리였다. Nowak 교수는 국제인권체제의 수용 실태에 있어서 일본의 이행과 비준 과정에서의 소극성을 지적, 환기하였다. 특히,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plaint mechanism)와 관련하여, 1st Optional Protocols to the ICCPR (1966/76)에 대하여 일본이 여전히 비준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UN Human Rights Committee의 기능이 동국 내에 미치지 못함에 대하여 재차 환기하였다. 물론, Nowak 교수의 강연에 참석한 일본 학계 인사들과 시민들은 그러한 지적에 공감하면서, 일본 당국이 동 선택의 정서를 비준함을 통하여 개인통보제도에 보다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하기를 희망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제인권법 체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관료사회의 사실상의 이원론적 접근에 근본적 변화가 근년에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관련 문제에 대하여 국제인권법학회에서 보고한 일본 교수, 전문가들도 국제법적 규범의 유입에 대하여 주권 침해의 우려가

Work: (전) 고문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권 재판소 재판관

²⁴⁾ *Supra* note 19 참조.

²⁵⁾ 명칭이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학풍, 계통이 상이한 별개의 대학임.

공적 부문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거듭 주지하였듯이 국제인권법 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일본의 실행은 유연하지 못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에 따른 개인통보제도 활용의 빈도가 높아지며, 그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수용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제인권법 체제의 개인통보 문제만큼은 대한민국은 일본의 이원론에 유사한 실행에 기인하는 부정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Nowak 교수는 2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즉,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행동하지 아니하는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 주요국들의 실행을 환기(대한민국은 22년간 사형 모라토리엄 상태, 제도적으로만 존치)하면서, 사형제도를 여전히 빈번히 활용하는 일본의 실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문방지협약(CAT) 비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에 대한 선택의정서(OPCAT) 미가입에 대해서도 환기하였는데, 본 선택의정서는 독립적 방문 위원회의 정규, 불시 방문의 허용과 그들의 온전함 점검을 통하여 간접적 억지 효과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며, 특히, 이를 UN Sub-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SPT)나 당사국 내 독립적 국가 방지 메커니즘(National Preventive Mechanisms; NPMs)를 통하여 구현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요컨대, Nowak 교수의 이틀에 걸친 강의는 국제인권법 체제의 발전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국가 실행 간의 지체(lag) 상태를 적절히 지적하였던 장이었다.

2. 기조 강연: “The 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Children’s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보고 : Manfred Nowak

한편, 인권대회 기조 강연에서 기관, 사법행정, 이민자 구금, 무력 분쟁, 국가 안보 등의 제반 사유에 기인하거나 부양자와 동반 구금된 경우의 자유 박탈 소년(아동)의 현황을 개론적으로 소개하였다. 다만, 이러한 피해 아동의 누적 인원수가 도합 700만명에 육박한다는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통상의 형사사법과 구분되는 독자적 소년 사법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 적어도 21개국이 이주 등의 사유로 소년(아동)으로부터의 자유 박탈을 하지 않거나 아니함을 천명하였다는 점은 전향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부양자와 동반 구금된 아동의 경우, 모의 이익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적 심사가 개별적 상황을 참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유엔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Nowak 교수는 강조하였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 제2427호(2018)에 기한 Handover Protocol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하여 서명되었음을 환기하였다. 아울러, 국제법상 비국가행위자인 테러조직과 연계된 아동들은 special courts for children에서 재판하고 있으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return plan에 입각하여 사안에 접근하는 차이점도 환기하였다.

3. 기조 강연: “형사법의 국제화, 국제형사재판소의 지도”

보고 : 오자키 쿠니코(尾崎久仁子)²⁶⁾

오자키 쿠니코 전 재판관은 기조 강연에서 로마규정 등이 작용함에 따른 실체법, 절차법, 피해자의 권리, 배상 등의 문제에 관하여 실무가의 시각에서 개론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국제인권법 체제의 수용에 있어서의 일본의 실행과 관련하여 구체적 이행법률이 수

26) (전) 일본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 UNODC 조약국장
(전)ICC 재판관, (전) 주 에스토니아 일본 대사. (2019년 초 소위 겸임 파동의 당사자)

반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국제협력법 수준의 입법에 그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박찬운 교수의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자키 전 재판관은 국제협력법은 일본 법체계 내의 통일성, 실행 등을 이유로 구체적 단계인 실체법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만 확인함에 그쳤다. 그의 발언은 국제인권법 분야에 있어서 국제법, 국내법에 관한 일원론적 실행의 수용에 소극적인 일본의 실행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내용적으로 현저한 부분이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단지 일본의 전직 ICC 재판관에 의한 기조 강연이라는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결국, 오랜 기간 일본의 공적을 거친 전문가의 사실상의 이원론적 시각을 확인하였던 점에 일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4. 국제평면에 있어서의 형사법의 전개

보고: 이시이 유리카(石井由梨佳)²⁷⁾, Stephanie L. Coop²⁸⁾

우선, 이시이 교수는 ‘월경범죄의 국제적 규제와 인권보장: 역외 전자증거 취득과 국제인권법’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논지를 대량 데이터 수사에 관한 사법 마찰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특히, 지난 세기 미국의 반 Trust법, 수출관리법의 역외 적용 시도에 대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반발이 존재하였다는 선례로부터 시작하였다. 다만, 대량 데이터 수사를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본질적으로 국가 간 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가치가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예상되므로 종전의 선례가 아우를 수 없는 양상으로 사안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부분에서도 보고자는 관련 분야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일본 역외에서의 법적 실행의 변화

27) 방위대학 준교수

28)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준교수

가 주권의 발현인 일본 내 법적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였다. 역외에서의 증거 취득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발제였으며, 국경의 통제라는 주권국가에 고유한 분야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발제에 있어 행간의 의미 속에 주권국가의 고유한 법체계와 외부적 요인인 역외의 관련 국제법의 발전을 분리하여 고찰하는 점이 특징이었다.

또, 일본에서 활동하는 Stephanie Coop 교수는 ‘국제형사법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여성과 성소수자 권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보고를 하였는데, 로마규정에 있어서 제7조 제2항 (g)의 ‘박해’의 정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서의 박해란 집단이나 공동체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위반하여 기본적 권리를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폭행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새겨진다. 일찍이 ICC 설립 당시 유엔 전권외교사절회의에서 용어로서의 gender의 사용 여부가 문제시되었으나, 최종본에서 이는 삭제,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보고자는 이를 최종 채택된 정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축된 성적 차이 및 지향에 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배제하지도 아니하는 ‘건설적 모호성(constructive ambiguity)’ 전략으로 보았으며, 미래의 개념적, 실행적 발전에 의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보고자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의 해석이 담긴 [성범죄 및 gender 범죄에 관한 검찰방침문서](2014)에서 ‘gender 및 그에 수반되어 남녀 및 소년·소녀에게 부여된 역할, 처신, 행동, 속성은 사회적 구축물’임을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gender는 생물학적 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명확히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무력 분쟁, genocide 등 대규모 폭력의 발생 시 국내법적 차원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한바, 이를 국제형사법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존재하며, 이들이 입을 피해를 ‘박해’ 이외의 범죄로서 소추, 처벌할 여지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유형화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 존재함을 역설하였다. 이 부분에 위에 언급된 건설적 모호성과 국제인권법의 진보적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gender 개념의 탄력적 해결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5. 판례연구

보고: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²⁹⁾, 와니 켄타로(和仁健太郎)³⁰⁾

위의 보고자들은 한일 간 민감한 불씨로 남아 있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에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와니 교수는 일본의 공식 입장에 가까운 견지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의미에 대하여 양자 모두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던바, 이를 기록하고 실익은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야마모토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판결’이라는 표제로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11:2)을 분석, 소개하는 보고를 하였다. 그는 대법관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다수의견(7인): 강제동원에 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 밖(2012년 파기 환송심의 주된 취지와 동지)이다.

개별의견(1인): 다수의견과 결론에 있어서 동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은 재상고심에 대한 기속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구권협정에 의거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였다는 상고 이유 또한 더 이상 논할 것도 없이 부정되는 것이다.

개별의견(3인): 다수의견과 결론에 있어서 동일.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29)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소속

30) 오사카대학 교수

이는 외교적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취지는 아닌바, 1심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 가능하다.

반대의견(2인):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역시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으로서 비록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일괄처리협정’으로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불가능”한 이상, 외교적 보호권 포기에 그치지 아니하며, 재판에 의한 권리행사를 부정한다는 취지이다.

보충의견(2인) 다수의견의 이유를 보충.”

일목요연한 정리 이후, 야마모토 변호사는 한일 양국 간에도 청구권협정 해석의 변천이 각각 일어났던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원래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된 포기설(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며, 개별 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취하던 것이 2000년 경부터 소송에 의한 청구제한설(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나, 소송에 의거 청구할 수 없음)으로 제한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에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개인청구권 소멸설의 입장을 견지하다가 1990년대부터 외교적 보호권에 한정된 포기설로 변천이 일어난 이후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견해로부터 사할린 잔류한국인, 원폭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등에는 부적용설을 채택하는 것으로 입장이 변모하였다. 특히, 2012년 대법원 판결부터는 강제동원기업의 식민지배에 직결된 불법행위 역시 일본군 위안부‘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적절히 언급하고 있다.

본 보고자는 한일 간 국제재판(ICJ,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이 현실화될 개연성은 높지 않으나,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한일 회담 당시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경위

등에 대한 반작용에서 유래하는바, 종래의 국가 실행과의 정합성의 견지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논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만 타당하다는 비판적 지적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일본에 있어서도 기업에 의한 시효 원용이나 법인격이 서로 상이하다는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됨을 시사한 판결도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내 헌법에 고유한 주장이 아닌바, 부당한 비판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야마모토 변호사가 대법원 반대의견에 대하여 비판적인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상기 반대의견이 ‘일괄처리협정’에 의하여 국가가 수취한 금원을 가사 별개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ICJ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판례에 대한 완전한 오독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무력 분쟁 시 군대의 행위에 주권면제가 적용될 것인지에만 한정하여 판단한 것이지, 일괄처리협정에 의한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이나 단서를 준 것이 아닌데, 그 취지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반면, 와니 교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구권협정의 문언을 고수하면서 일본의 종래 입장과 국익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서의 불법적 ‘식민 지배와 직결’된다는 용어에 모종의 실익이 존재할지는 모르나, ‘위자료(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 인지의 문제가 잔존),’ 침략전쟁, 반인도적 등의 용어에 특단은 실익은 존재하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장을 견제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베 수상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며, 국제법에 상응하는 판결인지를 따지는 등, 야마모토 변호사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³¹⁾

31) 하지만, 와니 교수의 보고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비판한 참석자도 존재하였던바, 본 주제와 관련하여 일본 내 견해의 분포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연구자, 실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시점에서 일본이 한국의 각종 조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연구, 대비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그러한 견지에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함을 확인한 유용한 세션이었다고 판단된다.

6. 해외의 연구 동향: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인권법 적용의
현황과 과제
보고: 박찬운 교수

본 연구대회에서는 회칙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 국내의 실행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국의 실행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박찬운 교수가 이에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주요인권조약에 대하여 환기하였으며, 다만 이에 기한 주장(대부분은 ICCPR) 취지가 재판상 인용된 경우가 199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3-4프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은 향후 극복할 과제임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개인통보 제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대립되는 실상도 일본의 연구자, 실무자들에게 알리는 보고였다.

특히, 일본과 비교할 때, 점진적으로 수용되어 가는 중인 개인통보 제도와 그 결정 선례들을 통하여 향후 대한민국에서의 당해 실행에 관하여 조망하였음은 아직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처지인 일본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이라 하겠다. 즉, 보고자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기속력의 인정기준 및 준 사법적 구제로 자리매김되어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음을 환기하였으며, 이는 자국 법역 외부의 실행 변화에 대하여 유보적, 배타적인 일본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실행 측에 전향적, 발전적 측면이 존재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IV. 결어

이번에 참관한 일본 국제인권법학회 연구대회는 설립 취지문이나 회칙, 그리고 프로그램에서의 문제의식으로부터 표상되는 정체성을 대체로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국제인권법에 관련된 일본 실행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Nowak 교수 등 세계적 전문가의 시선을 통하여 문제점을 되짚는 프로그램이 되었음은 평가할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박찬운 교수의 보고도 있었던바, 국내외 학계의 흐름에 대해서도 연결 고리와 모니터링을 고르게 유지하려는 입장이 잘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발표 전반에 있어서도 학계, 실무계의 시선을 골고루 배치, 반영하는 등 앞으로 국내 학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한일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이들의 연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발표 수준과 깊이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수준이 담보되는 한 일본 국제인권법학회와의 교류는 한국 한계의 입장에서도 향후 지속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